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08

발의연월일: 2024. 8. 28.

발 의 자 : 엄태영 · 강선영 · 신성범

김상훈 • 권영진 • 김예지

박충권 · 김정재 · 최보윤

고동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등을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성 실시공을 통한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가 필요함.

그러나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건설현장내 일자리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고 미수용시 태업, 작업방해와 점거, 일방적·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만연하여 건설현장의 성실시공이 곤란하고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에 애로사항이 많음.

이에 건설기계를 이용한 부당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일방적·집단적인 운송거부, 건설 현장의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하여 강압적으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등의 불법·부당행위를 제지하여 불공정관행 해소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발생을 방지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를 확립하려

는 것임(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7호의2, 제35조의2제1항제7호, 제40조제4호의2, 제44조제1항제5호 신설등).

법률 제 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맺지 아니한 현장 또는 그 진입로에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오랜 시간 세워두어 작업 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부당한 가동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계임대 차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 건설기계 임대 질서를 현저하 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2호, 제7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하 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 는 요구한 경우

제35조의2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5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를 위반한 경우

제40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하 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 는 요구한 자

제4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의무"를 "의무(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5. 제25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
무) ①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다	무) ①
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 <신 설></u>	3.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
	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맺지 아니한 현장 또는 그 진
	입로에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오랜 시간 세워두어 작업 등
	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4. 부당한 가동 조건을 제시하
	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
	기계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거
	부하는 행위 등 건설기계 임
	대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
용주의 준수사항) ①・② (생	용주의 준수사항)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u><신 설></u>	③ 누구든지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③ (생략)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 소·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 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 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신 설>

8. • 9. (생략)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 제35조의2(건설기계 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 또 한 행정처분) ①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구
<u>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
소·정지)
<u>제2호</u> , 제
<u>7호의2,</u>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u>
하여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
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
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
<u> 구한 경우</u>
8. • 9.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
하 해저눠브) ①

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 설>

② · ③ (생 략)

-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 4. (생 략) <u><신 설></u>

5. (생 략)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 ~ 6. (현행과 같음)
7. 제25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벌칙)
, _ , .
4의2.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
4의2.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 하여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
4의2.제27조의2제3항을위반하여건설기계조종과관련하여부당하게금품또는재
4의2.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 하여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 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 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4의2.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 하여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 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 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6. (생략)
- 7.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사업자의 <u>의무</u>를 위반한 자

8. (생략)

③ • ④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5조의3제1항제3호를 위반
하여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
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 한 자
<u> </u>
<u>.</u>
1. ~ 6. (현행과 같음)
7
의무(같은 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
<u> </u>

8.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